

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08. 12. 29 조례 제969호
일부개정 2015. 1. 9 조례 제1421호(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라 함은 사단법인 용인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(읍·면·동 및 리·통 조직을 포함한다.)를 말한다.
2. “새마을회원”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(사)용인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경비
2.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수련대회
3. 선진지 견학 및 연수
4. 새마을국민정신교육
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6. 지역 발전 유공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

제4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9>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. 9 조례 제1421호,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부터 ④ 까지 생략